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이해

오 항 녕*

1. 머리말
2. 과거 기록의 정리
3. 당대 기록의 구성과 관리체계
4.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의 윤곽을 살펴보면서 그 성격을 검토하였다. 먼저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었다. 국사(國史) 영역에서는 정사(正史)인 『고려사』, 편년인 『고려사절요』, 통사인 『동국통감』으로 귀결되었다. 동아시아사 편찬은 『치평요람』으로 나타났다. 조선초기

*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전임연구원

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이전 시대인 고려와 중국의 역사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조선의 정통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관료제는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발전시켰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경국대전』에서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했던 체계인 사관제도는 문헌(文翰)기구로써,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 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주제어 : 실록, 정사, 통사, 관료제, 문치주의, 편찬, 원본성, 신뢰성, 주목사

1. 머리말

그동안 조선전기 기록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상징인 실록과 실록 편찬 주체였던 사관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조선전기의 역사상을 보여주는 기록 중에서 실록이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실록은 단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전기 역사기록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실록의 질적 수준과 실록을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시스템의 성격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 우리는 실록에 대하여 기초적인 정보는 거의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역사편찬물인 실록에 대한 사료 비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지만, 이런 과제야말로 실록 연구의 질적 전환을 의미하는 징표이기도 하다.¹⁾

실록 연구 수준의 제고는 다른 일반 행정문서에 대한 연구의

1) 이러한 현황에 대한 정리는, 줄저, 『韓國 史官制度 成立史研究』, 한국연구원, 2003 및 『국역영종대왕실록청의궤(상)』 「해제」 2007, 민족문화추진회 참고.

축적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이제는 각급 관청의 문서 생산, 전달[行移], 보관 등에 이르기까지 이모저모를 자세히 밝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문서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값진 연구가 나온 바 있다.²⁾ 그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역사 연구의 기초가 닦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나아가 문서의 생산 및 활용 절차를 통하여 행정체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포함하여³⁾, 당시 실록을 포함한 기록관리 정책과 법전 규정 등에 대해서도 기록학적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는 연구나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⁴⁾ 근대 기록학의 개념이 고문서학(Diplomatics)에도 적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논란도 이렇게 연구 성과가 쌓여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채워야 할 과제이지 흠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본고에서 또다시 조선전기 기록관리에 대한 세세한 대목들을 들추어내어 논의 주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체적인 논의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전히 따져보고 복원해야 할 사실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유에서 본고의 논의의 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고 싶다.

우선 본고가 ‘한국기록관리의 정책과 제도’라는 통사적인 심포지엄 주제 아래에서 작성되는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겠

-
- 2)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1989. 2006년에 재수정본이 출간되었다.
 - 3)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 2003 및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2006.
 - 4) 윤훈표,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2000; 오항녕, 「實錄의 儀禮性에 대한 연구-慣例와 象徵性의 形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2003; 백선희,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2007

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추상적인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자칫 ‘기록관리’라는 주제가 소재주의적 편협성을 띠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을 우려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소재의 확장이 그 분야에 대한 연구의 축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확장된 소재를 실에 꿰는 방법이나 소재 확장의 이유가 되새김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필자의 성급한 노파심 또는 기우일 수도 있다. 작은 주제나 소재라도 그것이 충실히 탐구될 때 신뢰할 수 있는 전체 역사상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동안의 연구도 필자가 소재주의라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향하고 고민해야 할 기록학(기록관리학)의 범위랄까,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기록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미 인문학적 고민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만큼, 우리의 논의도 그런 수준에 맞추도록 노력해보고 전문성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것이다. 대개 이런 문제제기는 금방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민하는 이를 더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았을 때 학계의 문제의식이 성숙하고 학문도 성과를 내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논의의 순서는, 조선 전기 사람들이 ‘기록’을 통하여 과거 - 현재 - 미래를 어떻게 정리하였고 구축하였으며 만들어가려고 했는지 차례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전에 만들어진 기록을 모으고 편찬하면서 기억을 구성하고 ‘과거’를 정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록을 만들면서, 또 사용하면서 ‘현재’를 운영해가고 형성해갔을 것이다. 그 기록들을 보존, 관리하면서 ‘미래’에 기대하는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정책과 제도를 디자

인하는 관념과 사상이 깔려 있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런 논의 순서는 당시 역사의 전개와도 일치한다. 하긴 누구나 시간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므로 논리가 시간을 거스르기란 매우 어렵기 마련이기는 하다.

또한 큰 주제가 ‘정책과 제도’이므로 부득이하게 ‘공공기록’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공공기록’이란 중앙이든 지방이든 공공관청이 생산했거나 접수, 보존하고 있는 기록, 즉 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든 관례적으로 인정되든 권리, 증거 등에 대하여 공식적 효력을 갖는 기록을 말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⁵⁾

2. 과거 기록의 정리

사람들의 기억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약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리해도 개인의 기억

5)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필자의 아주 평범한 정의도 그리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선, 필자는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처럼,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는 정의를 염두에 두었다. 또, T. Livelton, *Archival Theory, Records, and the Public*, SAA, 1996, p.130에서 제시한, “주권자나 그 대리인에 의한 정치 행위 가운데서 생산, 접수, 보존된 모든 기록[all documents made or received and preserved in the conduct of *governance* by the sovereign or its agents]”이라는 정의도 참고하였다. 그런데 조선 시대에는 이런 정의가 딱 맞지 않는다. 흔히 ‘public’에 해당하는 당시 표현을 ‘공(公)’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재정부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은 중앙 공공기관이나 지방 행정기관에 부여되는 독자적인 재정권을 당시에는 ‘사(私)’의 영역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자의 정의가 조선시대 역사 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현재의 개념이나 용례가 과거의 그것과 차이가 나는 것은 관련주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된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은 최대한 그 개인의 생명이 유지되는 기간을 넘지 못한다. 이는 자명하다. 그렇다고 사회나 집단의 기억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재생이 계속되지 않는 한, 즉, 교육이나 학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사회나 집단의 기억도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또한 반복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앞서 사용하던 도끼자루’나 ‘앞서 간 수레바퀴’에 비유하며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⁶⁾ 그것이 ‘역사’로 기억되었다. 적어도 유가(儒家)의 전통에서는 그러하였다. 과거의 개별적인 대상들을 알고자 하는 욕구, 삶에 필요한 유용한 교훈과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욕구, 과거사실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실이나 문제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필요 등은, 시대를 떠나 매우 보편적인 사람들의 역사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⁷⁾

조선 건국과 함께 역사편찬이 시작되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크게 역사편찬은 국사(國史)와 세계사,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사는 다시 정사, 실록, 통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사로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있고, 통사로는 『동국통감』이 있었다. 당시 세계사였던 동아시아사는 『치평요람』으로 귀결되었다.

통사는 정사를 토대로 편찬되게 마련이었다. 실록은 당대사였기 때문에 과거의 정리를 위하여 편찬한 ‘국사’에 정사와 통사가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실록이 대상으로 하는 역사 공

6) 鄭麟趾, 「進高麗史箋」, 『高麗史』. 원래 「進高麗史箋」은 문종 때 金宗瑞에 의해 완성되었으나, 지금 전해지는 『高麗史』에는 癸酉靖難으로 권력을 잡은 세조의 신하였던 정인지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7) 이와 관련하여, J. 호이징가는 “베른하임은 ‘발생적(genetic)’인 설명의 기능을 근대역사학에 귀속시켜, 마치 근대 역사사상이 이전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보다 고급한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적절하게 지적했다. 『문화사의 과제』, 김원수 옮김, 아모르문디. 2006, p.51.

간으로 보면 ‘국사’의 범주에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 건국초에 역사 편찬 논의의 시작과 완성도 순서로 보면 대체로 그러했으므로, 정사, 실록, 통사, 세계사의 순으로 역사편찬을 개관해보기로 하겠다.

‘고려사’를 편찬했던 것이 조선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고려사를 편찬하고 보니까 정통성이 생겼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역사편찬과 새로운 정부(왕조)의 정통성과 상관성이 높았던 문화적 토양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하자마자 ‘고려사’를 편찬했던 데는 매우 실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통해 기대하는 ‘실제적인 요구’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첫째, 과거의 개별적인 대상을 알고자 하는 요구, 둘째, 삶에 필요한 경험을 얻고자 하는 요구, 셋째, 과거 사실을 통해 현재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요구일 것이고, 필자는 이 요구의 어떤 것, 또는 둘 이상이 결합하여 역사 또는 역사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요구는 ‘史實과 經驗에 대한 관심과 성찰’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며, 인류 유사 이래 보편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태조는 즉위한 뒤 내린 교서에서 새로운 나라의 제도는 고려의 옛 제도를 그대로 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⁸⁾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의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였을 것이고,⁹⁾ 당연히 고려사 편찬이 필요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과거에 어떻게 국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새로운 국가를 운영할 터였던 것이다. 필자가 고려사 편찬에 대해 과거 사실의 보존 등 역사의 실용성을 먼저 강조하고, 정통성의 확보와 같은 정치적 해석을 부차적으

8) 『태조실록』 권1 원년 7월 28일(정미).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

9) 『태조실록』 권1 원년 7월 18일(정유). “敎百官, 前朝政令法制得失沿革事目, 具錄以聞.”

로 보는 이유는 또 있다.

이미 밝힌 대로 분명 기전체 정사의 편찬은 새로운 왕조나 국가의 정통성의 확보와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正史’는 하나의 국가나 왕조를 단위로 하는 문명사를 기술하기 위한 서술 체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마천(司馬遷)이 처음 편찬했던 정사인 『史記』는 통사(通史)였다. 위로는 중국의 전설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삼황오제(三皇五帝)’부터 당대인 한무제(漢武帝)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대상으로 한 통사 기전체였다. 그러나 이후로 기전체는 국가나 왕조 단위의 역사를 편찬하는 데 유용하다는 경험칙을 통하여 내내 그렇게 활용되었다. 아무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이전 왕조의 정사를 편찬할 정도의 시간과 인적/물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새로운 왕조가 다양한 경로의 검증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사의 편찬은 분명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과 상관이 있고, 정통성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런데 건국과 동시에 고려사를 편찬하고자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당초 고려사는 기전체 정사가 아니라 실록이나 『자치통감』처럼 편년체로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¹⁰⁾ 그리고 고려사 편찬 체제가 편년체에서 기전체 정사로 바뀌는 것은 세종대를 거치면서였다. 처음 ‘고려국사’¹¹⁾가 편년체로 편찬되기 시

10) 『태조실록』 권7 4년 정월 경신, “(敎鄭摠曰)…法司馬編年之規, 勒成全書.” 『고려사』 箋文에도 태조대 『고려국사』의 편찬은 『통감』의 편년법을 본떴다고 명시되어 있다. 『문종실록』 권9 1년 8월 경인, “知春秋館事金宗瑞等, 進新撰高麗史…其進箋曰…命史氏而秉筆, 倣通鑑之編年”; 鄭麟趾, 『進高麗史箋』 『高麗史』.

11) ‘고려사’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달라 혼동을 주기 쉽다. 통상 鄭道傳과 鄭摠이 편찬한 『高麗國史』, 河崙이 만들다만 『竄定高麗史』, 柳觀·卞季良의 『改修高麗史』, 柳觀·尹淮의 『讎校高麗史』, 安止·權暉의 『高麗史全文』으로 부른다. 물론 현재 남아 있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문제될 것이 없다.

작했던 것은 고려말 공민왕 재위 이후의 실록이 편찬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공양왕 3년에 이색(李穡) 등이 실록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끝을 보지 못했고, 건국한 뒤 태조 7년이 지나서야 공민왕-공양왕대의 실록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록과 정사에 대한 선명한 구분이 없이 ‘고려사’ 편찬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구분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은 역사편찬의 파생적 효과보다는 본연의 효과, 즉 앞서 말한 세 가지 실제적 이유가 중요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기전체 정사인 고려사는 편찬체제와 서법(書法)의 논쟁을 거치면서 모습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새로운 나라의 정통성이라는 상징성이 더해졌다. 그리고 세종 때 완성되었지만 세조에 이르러 간행되었다. 거의 60년에 걸쳐 편찬이 마무리되었던 셈이다.¹²⁾

한편 고려사 편찬과정에서는 ‘禡王’과 ‘昌王’에 대하여 신돈(辛頓)의 아들인 ‘辛禡’, ‘辛昌’이라고 표기함으로써 그 자체로 역사의 왜곡 시비를 낳았다. 조선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애매한 소문을 사실로 확정하여 역사에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사 편찬에는 조선 건국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¹³⁾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

12) 震檀學會 編, 『高麗史』 『韓國古典심포지움』 제1집, 一潮閣.

13) 고려사 편찬자들은 ‘범례’를 통하여 ‘신우’, ‘신창’이라고 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표기를 두고 ‘왜곡’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역사학의 뿌리 깊은 고민을 드러내준다. 어떤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이 선별적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심리학계에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두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 학자들은 기억이 재생될 때마다 뇌의 시냅스가 재구성된다는 연구를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억이란, 어떤 실체가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 재구성되면서 나타난다는 말이다. Bong-Kiun Kaang 외, ‘Synaptic Protein Degradation

한다. 사실 ‘辛禡’, ‘辛昌’인지 아닌지 과연 누가 알겠는가?

정사인 고려사도 그러했지만, 당대사인 실록의 편찬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례’대로, 즉 국왕이 승하한 뒤 일정한 시기가 되면 편찬하기 시작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실록편찬이 논의되었던 것은 태종 9년, 태조가 승하한 다음 해였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할 수 없는 논쟁이 발생하였다. 다른 아닌 실록을 언제 편찬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록편찬 시기는 조선시대에 정식화된 것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국왕이 승하한 뒤 새 국왕이 정상적인 집무를 시작함을 알리는 졸곡(卒哭)과 함께 실록편찬이 시작된 것은 3년상이 정착되어야 가능하였고, 따라서 3년상의 개념이 없었던 고려시대에는 이런 규칙성이 없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국왕이 승하한 뒤 편찬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애초 중국 당에서 실록이 처음 편찬되었을 무렵에는 황제의 재위기간 중에 편찬되기도 했고(唐太宗의 경우), 연호 단위로 편찬되기도 했다.(唐玄宗의 경우, ‘開元實錄’)

하지만 태종 9년, 10년의 실록 편찬 논쟁에는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애당초 이 논쟁에는 참외관인 한림들이 실록편찬에 참여할 지 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었다. 그것은 사관

Underlies Destabilization of Retrieved Fear Memory,’ *Science* VOL319, 29 FEBRUARY 2008. 그러니까 기억이 사실과 달라지는 것은 생물학적 조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물론 개체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재구성을 범주가 다른 ‘사회의 기억 재구성’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관찰해야할 유비 관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닐까? 시냅스가 작동하는 방식처럼, 사회에서는 검열과 배제와 선택의 기제를 통하여 재구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럴 때, 사회와 개인이라는 범주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기억의 재구성에 대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소박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이기도 하므로 확인해 두고자 한다.

들의 기록이 편찬과정에서 드러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위해에 대한 우려의 다른 표현이었다. 그래서 하륜(河崧) 등이 태조실록을 편찬하려고 하자, 우승범(禹承範) 등의 사관들은 실록은 ‘代’를 바꾸어 편찬한다고 주장하였다. 태조 즉위로부터 지금까지 겨우 18년이므로 ‘代’로 따지면 3대지만 ‘대’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젊은 관리였던 황희(黃喜)는 어디서 들었는지 실록은 3대가 지나서야 편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⁴⁾ 당시 사관들의 주장에는 재상들 중심으로 실록을 편찬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기록의 왜곡이나 기록(사초)을 남긴 사람들에게 대한 잠재적 위협 등, 충분히 인정할만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문제의식이 곧 주장을 정당화하지는 않는 법이다. 당연히 주장에는 논거가 필요했고, 그들의 주장에서 증거로 제시했던 실록편찬에 대한 정보는 잘못된 것이었다. 결국 태조실록은 사관(翰林)들이 배제된 채 하륜 등이 주도하여 편찬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록 역시 나중에 세종대를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록청’ 편찬체제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이 무렵 중앙정부나 재야에 있던 조선 지식인들이 연구했던 중요한 역사서는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이었다. 이 책으로 국왕을 비롯한 국가 정책 결정자들이 세미나를 하는 경

14) 『태조실록』권18 9년 9월 경오사. “上謂經筵史官禹承範曰, 疏意誠是. 然代近而修史者, 此指何代何人乎? 王氏之事, 李氏修之, 李氏之事, 後代修之歟? 承範逡巡不能對. 上曰, 非給汝而問之也. 承範對曰, 所謂代者, 非指易姓, 乃祖宗子孫相繼之遠近也. 自太祖至于聖上, 雖云三世, 纔十八年事也. 豈可謂異代乎? 又任修撰之臣, 豈無其身之事乎? 以一時之臣, 論當世之人物, 皆爲不可也…上謂左右曰, 堯之事, 虞史修之…至於漢魏以下則不然. 且孔子修春秋, 在定哀之世, 而并書定哀時事, 以此觀之, 則編修實錄, 在所不疑, 歷代之事…若使其子見之, 則必刪之矣, 而錄而不刪, 則久而後修史, 從可知矣. 黃喜對曰, 史草必過三代以後出, 今此舉實爲未便.”

연 강의를 계속했던 것은 물론, 태종 10년 주자소를 설치하여 간행하기도 하였고, 세종 2년에 새로운 활자로 간행한 것도 역시 『자치통감강목』이었다. 세종은 수 년 간에 걸쳐 이들 역사서에 대한 주석 작업을 주도하여 두 책에 대한 주석서인 ‘思政殿訓義’를 간행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판본으로 미루어보아도 사정전훈의의 간행과 보급이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가 주목되는 더 큰 이유는 앞의 고려사 편찬이나 실록 편찬에서도 중요한 준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통사 편찬에서도 모델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사에 대한 통사인 『동국통감』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통감』의 체재를 빌린 것이었다. 통사 편년이라는 기획은 『자치통감』의 아이디어였다.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도 권근(權近)의 『삼국사략(三國史略)』 등에 시원을 두고 있었으니 꽤나 오랜 기간의 숙성을 거쳐 완성되었던 셈이다. 이렇게 해서 국사(國史)의 영역에서는 정사, 실록, 통사가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통사이자 당시 세계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과 중국의 역사를 정리한 작업이 있었는데, 『치평요람(治平要覽)』이 그것이다.

150권에 달하는 사초(史抄)인 『치평요람』은 세종 때 일단 완성되었지만, 세조 때에도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종종 때도 간행되었다. 사료를 다루는 원리로 보면, 모든 역사편찬은 ‘述而不作’일 수밖에 없지만, 여러 역사서에서 발췌하여 또 다른 역사서를 구성하는 ‘사초(史抄)’ 형식은 중국 송(宋) 이후로 하나의 체재가 되었다. 필자가 아직 이 ‘사초’ 형식의 역사 편찬을 개념적으로 설명할 능력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유용하고도 의미 있는 방법이자 경향이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실

제로 중국 청(淸)나라 건륭제(乾隆帝) 때 편찬되었던 사고전서(四庫全書)의 사부(史部)에도 『송사(宋史)』 이후부터 이 사초류(史抄類)가 따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¹⁵⁾

『치평요람』은 중국 춘추시대부터 원나라까지, 그리고 조선 역사에서는 고려까지 있었던 사실을 초록한 것이다. 『치평요람』은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大學)』의 ‘治國, 平天下’에서 따온 ‘治平’과, ‘중요한 대목을 참고한다.’는 의미의 ‘要覽’을 합쳐 이름을 지었다. ‘조선과 세계의 평화로운 정치를 위한 전망을 역사의 경험에서 얻기 위해 편찬한 책’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과거’는 각 시공간의 범주에 따라 정리되어 갔다. ‘과거’의 정리는 ‘현재’의 삶을 꾸려가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가 곧 얼마 안 있어 ‘과거’가 된다는 것을 알듯이, 이제 막 출발한 조선의 리더들도 그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과거’를 정리하면서 ‘현재’를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3. 당대 기록의 구성과 관리체계

조선 정부는 관료제를 기반으로 움직였다. 물론 고려시대도 귀족주의적 성격을 띤 관료제라고 말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층 정비된 관료제를 지향하였다. 관리의 임용과 승진에서도 시험과 고과(告課)의 방식이 강화되었고, 직위와 직무에 대한 책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관료제가 강화될수록 행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강

15) 아직 이 사초류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조될 수밖에 없었다.

관료제는 사람의 말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으로 가동되며, 그 기능은 늘 문서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듯하다. 관료제가 문서의 생산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위하여, 상세한 관료제 이론보다는 상식적인 관료제에 대한 개념, 즉, ‘정부의 어떤 직무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지닌 사람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는 위계를 갖춘 조직체계’라는 정도로 이해하기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이라는 기록학의 관점에서 볼 때 관료제가 의미 있는 것은 역시 관료제에서는 사람이 ‘임명’된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임명된다는 말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바뀐다는 뜻이다. 승진을 하든, 그만두든, ‘담당자’가 바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에 그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이러한 인적 변동으로부터 항상적으로 유지, 지속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담당자가 바뀔 때 따라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직무가 유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이 갖는 신뢰도는 그 자체가 말을 한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는 체계 속에서는 좋은 소통 방법이 되지 못하였다. 그 필요는 바로 문서가 메워주었다.¹⁶⁾

관료제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고 평가되는 중국 당(唐) 나라 초기인 태종(太宗) 때 실록 편찬이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때 시작된 실록 편찬은 사학사적인 의미도 크지만, 정치제도사의 측면에서 보아도 관료제 발달의 반영이라는 또 다른

16) 국왕은 종신제이므로 관료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질적이다. 임기가 종신인 국왕은 그래서 말로 명령을 비롯한 의사를 전달한다. 그러나 그것을 수행하는 쪽, 즉 듣는 쪽이 ‘관료’이므로 결국 승정원에서 ‘전교’ 등의 문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관료제는 문서의 작성을 일반화한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제 발달의 반영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실록 편찬 자체가 이미 분업화된 관료집단에 의한 기록의 생산, 수집, 보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를 이어가며 역사가 가문에서 담당했던 일을 이제는 관료조직의 ‘官廳’에서 수행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 즉 기밀의 누설, 기록의 왜곡, 전문성의 결여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쏟아졌던 것이다.¹⁷⁾

두 번째 함의는, 관료제로 인하여 기록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실록이 편찬되었다는 점이다. 기록이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다 보면 그때그때 기록을 정리할 필요가 생긴다. 안 그러면 관료제는 가동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대사 편찬인 실록이라는 역사적 산물을 낳았던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조선전기 관료제의 발달에 따른 행정문서의 일반화와 관련된 사실을 기록의 생애주기(Life-cycle) 개념에 따라 정리해보기로 한다. 생애주기 개념이란, 모든 업무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문서도 그 업무나 사안에 따라 만들어지고 사용되다가 일이 끝나면 수명이 다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조선 정부는 일단 기록의 생산을 비롯한 통용의 방법으로 명(明) 태조 때 편찬된 홍무예제(洪武禮制)의 규정을 채용하였다.¹⁸⁾ 고려말 정국과 행정체계의 형편으로 보나, 건국 직후의 형편으로 보아 일단 홍무예제를 수용하여 나름대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고려시대의 ‘공첩상통식

17) 劉知幾, 『史通』, 710, 趙呂甫(校注), 『史通新校注』 「史官建置」, 中慶出版社, 1990, pp.1097~1098 및 高柄翊, 「『史通』과 歷史批評의 理論」 閔斗基 편, 『中國의 歷史認識』下, 창작과비평사, 1985.

18)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 2003

(公牒相通式)¹⁹⁾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으며, 원(元)의 규식은 홍무예제에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서의 격식(格式), 각 관청사이에 문서를 주고받는[行移] 체계, 문서 용어 등을 홍무예제의 ‘행이체식(行移體式)’에서 참고하였고, 조선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계달(啓達), 하달(下達), 상달(上達), 평달(平達) 등 주고받는 관청의 위계에 따라 문서의 명칭이 달라지는 것은 ‘예(禮)’에 근거한 구별의 표현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 반포된 뒤에는 경국대전의 ‘용문자식(用文字式)’ 규정²⁰⁾을 따랐다. 그런데 경국대전 규정은 고려시대의 공첩상통식이나 홍무예제의 행이체식보다 훨씬 문서 용어와 명칭을 단순화하였다. 관료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입안(立案)’ 항목을 두어, 나중에 증거로 삼을[後考]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조선전기 관청에서 기록이 생산, 관리되었던 체계를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개념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을 하면 문서가 나오게 마련이고, 당연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용(또는 준현용) 기록은 관청 집무실에 놓고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업무가 끝나면 등록(謄錄)을 하든지 따로 편철하여 보관했다고 한다. 아마 의정부의 가각고(架閣庫) 같은 장소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여

19) 고려시대 행정과 문서에 대해서는, 강은경,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 행정 운영」 『한국사연구』 122, 2003 등 일련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20) 「禮典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 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繁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外, 皆啓) 其餘衙門並報屬曹…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 並用牒呈, 都總府用關…官府文字並置立案, 以憑後考)”

기서 현재 생각하는 준현용의 단계는 다소 애매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단 비현용 단계에 있는 기록은 등록이나 편철하여 보관했을 것이고,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여 재생하여 다시 종이로 활용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상상하기가 쉽다.

그런데 조선시대 관료제의 표현이자 활동 결과이기도 한 문서에 대한 관리는 현재의 우리가 볼 때에는 다소 생경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필자의 생각에, 조선시대에는 기록[Records, Archives]에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록의 생산을 놓고 보아도 일선 관청에서 생산되는 문서 외에 따로 사관들이 사초(史草)를 남긴다. 사초의 생산과 관리에 대해서는 세종 16년 춘추관의 계(啓)²¹⁾와 경국대전 장문서(藏文書) 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다. 사초를 남기는 사관은 예문관의 전임인 한림(翰林)과 사헌부 등 주요 관청의 관원으로 구성된 겸임사관이다. 이렇게 각 관청의 기록과, 조정과 지방의 정치활동을 기록하되, 춘추관에 보관하는 사초와 집에 보관하는 사초가 따로 있었다. 사관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경험도 사초로 작성하여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도 사초를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겸임사관은 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청의 주요 문서를 예문관에 보내는 일도 맡고 있었다. 사관은 사초와 각 관청의 주요 문서를 예문관에서 시정기(時政記)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다가 실록이 편찬될 때는 다시 승정원일기나 다른 관청의 문서를 수합하여 실록의 자료로 삼는다. 물론 이 과정은 비공개로 관리된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당대에 참고하거나 열람할 목적이 아니라, 언제 있을 지조차 모르는 ‘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

21) 『세종실록』 권66 16년 11월 5일(무인). “春秋館承教旨, 擬議廣記事之條以啓. …”

니까 일단 구분해보자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할 때, 당대의 실용성과 후대의 실용성을 띤 각각의 기록이 공개(전자)/비공개(후자) 방식으로 관리되면서 남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 조선전기나 조선시대 기록관리 체계의 특징이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기는 석연치 않다. 이러한 이원성이 왜 생겼을까? 이 문제는 실록의 탄생부터 더듬어보아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나라 초에 실록이 편찬되기 시작했던 것은 육조(六朝)에서 당(唐)에 이르는 시기에 정치세력이 관료제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상응하는 인력군이 형성되고, 동시에 그 관료제의 작동에 필요한 기록이나 문서가 증가하면서 그 문서를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식으로 처리 또는 관리해야 했고, 그 관리 방식이 곧 실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앞서 피력하였다. 이런 당대 실용성은 실록의 발생 당시 또는 이후에도 곳곳에서 확인된다.

실록편찬의 주창자이며 동시에 『고조실록(高祖實錄)』의 공동편찬자였던 당 태종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당대(唐代)에는 황제까지도 실록을 통하여 인접한 시대의 경험을 참고했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한유(韓愈)가 편찬한 『순종실록(順宗實錄)』은 그의 문집에 실릴 정도였다. 그만큼 일반적인 이용이 가능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실록편찬이 관례화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실록이 황제의 재위 중에, 또는 재위 단위로 편찬되면서 곧바로 편찬과정에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편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시정이나 일력(日歷)을 위시한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누설은 물론 사화(史禍)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해있었던 것이다.

이미 당 『측천무후실록(則天武后實錄)』의 편찬에 참여했던 유지기(劉知幾)가 실록편찬이라는 새로운 역사편찬 방식에 대하여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였고 그 결과가 『사통(史通)』이라는 저술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다음 장에서 조선의 사화(史禍)에 대해 살펴볼 것이므로 이런 갈등을 상론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관청이라는 일군의 관료집단에서 실록을 편찬하는 한 유지기 등이 지적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관료의 집단편찬에는 필연코 그 조직의 위계가 반영될 것이고, 총책임자로서 재상들이 임명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황제의 열람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실록을 당대사라고 하듯이, 실록이 당대 국가경영이나 정책에 참고할 가치가 큰 이상 그 실록을 당대의 활용 목적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그러니까 직서(直書)라는 역사기록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의 관점에서 보면 실록을 황제도 열람하고 재상이 감수하는 것은 불안한 일이겠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탄생한 실록의 성격상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실록 이전의 역사서는 당대사가 아닌 정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정사는 이미 왕조가 멸망한 뒤에 편찬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으며 그래도 큰 사단이 생기지 않을 기록이었던 비하여, 실록은 탄생 자체가 바로 직필(直筆)의 위협이라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일반 행정문서에 속하는 기록은 국정의 참고를 위하여 열람하게 하고, 실록은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실록이 갖는 비공개성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일종의 완충작용이라는 것이다. 비공개성은 공개의 방법이나 인프라가 여의치 않은 시대의 제약 때문에

택하게 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공개하지 않았기에 보존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다.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당장의 비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즉 비난을 유예할 수만 있어도, 굳이 지금 기록을 없애거나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일반 행정문서와 실록의 성격은 조선전기에 이미 이렇게 차별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실록의 편찬과 관련해서는 기록학의 관점에서 검토할 또 다른 주제가 있다. 앞서 말한 ‘직서’, 또는 ‘직필’의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각 관청 업무에서 활용이 끝난 문서는 폐기되거나 보존된다. 사관의 사초도 그러하였다. 사관의 사초는 실록 편찬이 끝나면 세초하고 그 종이는 재생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그러니까 사초의 운명은 애당초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종종 ‘영구보존기록(archives)’을 사초에 비유하는 것은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영구보존기록’은 바로 ‘실록’이라고 보는 것이 개념적으로 타당하다. 실록 편찬과정에서 보면, 사초는 ‘평가(appraisal)’를 거쳐 폐기되고 살아남은 사초는 실록에 ‘등록’되는 격이다.

바로 이러한 ‘평가’와 ‘등록’ 때문에 ‘직서’의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직서’는 요즘 기록학의 이론에서 보면 ‘원본성(Authenticity)’과 ‘신뢰성(Reliability)’ 개념과 관련이 있고, 역사학에 서는 오래된 ‘1차 사료’, ‘2차 사료’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역사기록의 생명처럼 중시된 ‘直書’(또는 直敍)란 말에는, 첫째, 원래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둘째, 그 기록을 변조, 훼손하지 않고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공공기록의 경우 직서는 사관의 자기 정체성(整體性)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원본성과 신뢰성에 대한 세세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우리의 문제제기와 관련된 정도의 정의만 확인하기로 한다. 최근 논의에 따르면,²²⁾ 대체로 원본성에 대해서는, “어떤 문서가, 그 문서가 주장하는 바의 바로 그 기록”일 때 원본성이 있다고 풀이한다. 원본성이란, 그 기록이 만들어진 이래 어떤 조작이나, 대체, 왜곡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 그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또한 원본성은 기록의 내재적 성격이 아니라, ‘정해진 장소’, 예를 들어 절이나 공공시설, 창고, 기록관 등에서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 기록에 부여된 성격인 것이다.²³⁾

한편, 신뢰성이란 기록의 형식과 생산 절차에 의하여 기록에 부여되는 속성이다. 여기서 형식이란 그 기록이 생산되는 법적, 사회적 체계를 필요로 하며, 가장 알기 쉬운 예로는 날짜와 수결(手決)이나 사인을 들 수 있다. 생산 절차란 어떤 행위나 행위의 일부가 기록되는 일련의 규정이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란 해당 기록이 증거로써 갖는 권위와 진실성을 가리키며, 그 문서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신뢰성은 문서가 ‘초안(草案, drafts)’이든, ‘원본(originals)’이든, ‘사본(寫本, copies)’이든 모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실록이라는 특수한 ‘영구보존기록(archives)’과 그 편찬을 둘러싼 논제들은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실록에 대한 우리의 ‘인상’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시도

22) Luciana Duranti,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 *Archivaria*39(spring 1995)

23) Luciana Duranti, *Diplomatics-New Uses for an Old Science*, The Scarecrow Press, Inc., 1998, p.36. 우리가 동사무소 같은 데서 주민등록 사본을 발부받았을 때 찍히는 ‘원본대조필’을 생각하면 된다.

하는 개념적 이해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상’이 피상적이고 아직 개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해석의 시도 자체가 있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할 듯하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위의 신뢰성 개념에서 보면, 실록의 ‘편찬’이 그 실록의 신뢰성에 흠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초는 ‘편찬’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편찬’은 곧 기록학에서 말하는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그 편찬은 공적인 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된다. 일단 사초를 몽개어 내용을 없애거나[塗抹], 도려내거나[刀削], 과기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특별히 범죄로 규정하였다.²⁴⁾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이극돈(李克墩)이 김일손(金駟孫)의 사초를 누설하여 터진 무오사화를 겪은 뒤에는 편찬 과정에서 사초를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²⁵⁾ 실록을 ‘신사(信史)’, 즉 ‘믿을 수 있는 역사’라고 부른 것은 이런 까닭이었고, 이런 ‘신뢰성’을 반영하여 실록의 영어 대역어를 ‘Veritable Record’라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²⁶⁾

24) 『세종실록』 권123 31년 3월 2일(壬午). 春秋館의 啓를 요약하면, “(1) 만일 史官이 자신과 관계된 일이라 하여 꺼리거나, 친척이나 친구의 청탁을 듣거나 하여 흔적을 없애려고 사초첩(卷綜)을 전부 훔친 자는 ‘盜制書律’을 적용하여 斬하며, (2) 도려내거나, 문지르거나, 먹으로 지운 자는 ‘棄毀制書律’로 논하여 斬하며, (3) 동료관원으로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는 ‘기회제서율’에서 한 등을 낮추며, (4) 사초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자는 ‘近侍官으로 機密重事를 누설한 죄’에 따라 斬하며, (5) 위의 사항에 해당되었다가 사면을 받더라도 正犯은 告身을 박탈하여 영구히 서용하지 아니하되, 만일 犯人이 죽었으면 追奪하고, (6) 알고도 고발하지 않은 자와 누설한 자는 職牒만 회수”하여 사초의 관리를 엄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25) 『중종실록』 권3 2년 6월 17일(己丑)

26) Peter H. Lee edit, *Sourcebook of Korean Civilization(Vol.1)*, Columbia University Press,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초의 보호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사관이라는 공직자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만든 사초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초를 제출할 때 이름을 적고 당연히 수결을 하였으며, 실록이 편찬된 뒤에도 편찬에 참여한 총재관 명단이 적힌 ‘실록청의궤’를 편찬하였다. 또한 실록은 원본성에서도 하자가 없었다.²⁷⁾ 일단 실록이 편찬된 뒤에는 정해진 권한을 가진 사관만이 열람, 등서, 관리할 수 있었다. 흥미로움을 넘어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스럽기까지 한 사실은 조선시대 4사고(史庫), 또는 5사고에서 실록의 원본성을 해친 일이 있었다는 보고가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현재 실록을 이용하는 우리들도 실록의 완성 이래 그 원본성에 대한 어떤 위해를 발견하기 어렵다.

기록학의 ‘관할의 연속(chain of Custody)’ 개념에 비추어도 이러한 성격은 증명될 수 있다. 사초는 원래 ‘筆削²⁸⁾’을 거쳐 실록이 되든지 세초가 되든지 하도록 작성된 기록류였다. 그리고 그것은 공적 권위를 가진 관원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그 문서를 생산하였거나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 그 문서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즉 관할권(Custodianship)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였기 때문에 기록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실록으로 편찬된다고 하여 전혀 원본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었다.

1993, p.530.

27) 단지 실록을 3부 또는 4부(조선후기에는 5부)를 간행했던 것이 문제일 텐데,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역시 보존을 고려한 원본(original copy)이 복수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록청의궤에 관한 참고 논문으로는, 줄져, 『국역영종대왕실록청의궤(상)』, 「해제」, 민족문화추진회, 2007.

28) 筆削이란, 글자 그대로, 어떤 기록은 기재되고, 어떤 기록은 제거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관이 직접 작성하거나 견문을 기록한 사초만이 아니라, 실록 편찬의 자료가 되었던 다른 문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실록에는 사초(또는 시정기) 외에도 승정원에서 작성한 ‘承政院日記’, 반역 사건 등에 대한 조사 및 심문 기록인 ‘推案’이나 ‘鞫案’, 가뭄과 같은 기상 변동 정보, 호구(戶口)나 군적(軍籍) 같은 데이터 셋(data-set), 과거시험 등과 같은 주요 관청의 긴요하고 핵심이 되는 문서[緊關文書]도 가져다 필삭하여 등록하였다. 이 경우에도 문서 원본의 내용이 줄어들고 물리적 형태가 변형되지만, 기록학의 개념으로 보면 신뢰성과 원본성에 하자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의 문서가 실록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필삭’되며 이것을 ‘훼손’된다고 보는 우리의 관점이다. 이 때문에 기록학적 개념과, 역사학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 개념 사이에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아직 우리 학계에서 ‘1차 사료/2차 사료’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이 저조한 상태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기록학의 개념을 통하여 실록이 기록으로써 갖는 성격을 소개, 검토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역사학의 사료비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더 미루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4.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

이제 사회의 기억, 기록을 보존하였던 배경과, 그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전망했던 미래의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겠다. 동시에 그들이 미래의 가치를 담아 뿌리내리고자 했던 제도가 ‘史禍’ 속에서 떨그럭거리면서도 자리를 잡아갔던 과정을 살펴보

면 우리는 조선전기 역사를 통해 기록관리 일반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성장과 정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면, 조선 전기의 기록관리는 성리학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었다.²⁹⁾ 원래 ‘인간 사회’를 대상으로 사상체계를 꾸렸던 공맹(孔孟) 유학에서, 역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구체적으로 자신이나 사회(정치)에 대한 평가를 그의 시대 또는 후손이 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한한 인간이 역사를 통하여 연속성과 무한성을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세속화된 종교성의 측면도 띠고 있었다. 그러나 불교는 윤회와 해탈을 골자로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전혀 상이한 방식의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전환은 바로 불교에서 신유학, 즉 성리학으로의 재전환이었다.

새로운 사회질서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에 고무된 지식인들의 사명감이 결합하여 『맹자(孟子)』를 인간의 내재적 도덕성의 근거를 확립하고 『대학(大學)』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영역을 통괄하는 주체적 책임감을 천명하며, 『중용(中庸)』을 통하여 우주론적 전망을 획득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불교(佛敎)의 형이상학(形而上學)과 도교(道敎)의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는 자연주의적 관점을 흡수하는 지양의 과정이었다. 특히, 자연주의적 관점의 도입은 윤회설(輪廻說)과 내세관(來世觀)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는 점에서 불교의 종교적 지배권을 박탈하여 다시 세속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는 세속화된 사상체계를 통하여 다시 심판관으로 복권되었다. 겁낼 것은 천당이나 지옥, 연옥, 또

2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줄고, 「性理學的 歷史觀의 성립:超越에서 現實로」 『조선시대사학보』 9, 1999 참고.

는 윤희의 사술이 아니라, 나의 사후에 또는 어떤 행위의 결과 뒤에 따를 세상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다. 나아가서 나의 행위로 인해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입든 칭송을 듣든지 할 가족이나 나와 사회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고려가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학자들을 위하여 성리학 역사서인 『자치통감』과 『자치통감강목』의 정본을 완성하고, 국가경영의 원칙과 비전을 논하는 경연에서 이들을 토론하면서 역사편찬의 전거로 활용하기도 했고, 사상적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조정(朝廷) 차원의 역사연구는 수많은 사실과 경험의 발견이기도 했고, 성찰할 만한 교훈의 되새김이기도 했으며, 당시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사관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기록관리체계는 문치주의(‘王道政治’)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향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문화의 성숙, 그에 대한 합의의 시간이 필요하였고, 어림잡아 약 건국 이후 150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이른바 ‘史禍’라고 표현되는 기록을 둘러싼 갈등에서 그 이상이 어떻게 지난하게 현실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제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마련되었다 해도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다. 제도를 담당하는 주체들의 역량은 물론, 그 제도의 영향을 받는 넓은 의미의 이해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제도의 운용과 정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실제로 벌어지는 사태는 제도의 규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얼핏 보기에 조선전기의 기록을 둘러싼 갈등, 즉 넓은 의미의 ‘사화’가 그때그때의 정치권력의 자의성이나 정치상황의 우연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한 듯이 보이지만, 당시 당대사의 작성과 관리를 규정하는 제도에 따라 갈등의 양상은 사뭇 다

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문제는 당대사의 기록과 편찬이라는 두 단계의 산물인 사초와 실록의 작성(편찬)과 관리로 압축된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기록, 예를 들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같은 경우는 그런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초와 실록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뿐이다. 사초는 행정문서라기보다 견문(見聞)과 사평(史評)을 할 수 있는 기록이었고, 사관의 사초가 실록 편찬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았으므로 사초와 실록을 둘러싼 갈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선초기 실록의 열람 금지 및 편찬 과정에서 누설 방지 조치가 법령화 되었고, 사초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관례와 규정이 성립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국왕이나 고위 관료 같은 정치권력, 즉 외적 요소로 인한 갈등도 존재했지만, 예종 때 세조실록을 편찬할 당시 사초를 고쳐 제출했던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에서 보듯이³⁰⁾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사관들의 자기정체성도 중요한 변수였다.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이 지키는 법이다.

조선초기의 당대사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소해가던 관례와 규정이 무너진 것은 잘 알다시피 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戊午土禍, 1498년)였다. 연산군대에는 파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실록과 연관된 전면적인 제도의 붕괴를 겪었고, 중종반정 이후 보완대책이 강구되었지만, 명종 즉위년(1545년) 을사사화(乙巳土禍)를 계기로 또 한 번의 반동을 겪게 되었다.

명종 3년(1548)에 무정보감(武定寶鑑)을 편찬하면서 을사년 8,

30) 이 사건의 전말은, 이궁익, 『국역연려실기술』(II), 민족문화추진회, ‘민수의 사옥’에 상세하다.

9, 10월분 시정기를 춘추관에서 내가면서 시작된 사화(史禍)는 을사년과 병오년 시정기에 있는 사관들의 ‘註’, 즉 사평과 상황 설명으로 구성된 사론(史論)을 트집 잡아 사관들을 탄압한 사건이었다. 이기(李芑) 등은 시정기 중 을사사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기록한 17항 19조목을 추려서 보고하였다. 그리고 날짜를 추적하여 해당 시정기를 작성한 안명세(安名世)와 손홍적(孫弘績)을 의금부에서 국문하였다. 안명세와 함께 사관으로 근무하던 한지원(韓智源)은 겉으로는 안명세를 칭찬하면서도 안명세의 사초 내용을 이기에게 알려바쳐 사화를 초래했다는 점에 서³¹⁾ 당대사를 둘러싼 갈등은 주체적 요인이 외적 요인 못지않게 결정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사관제도라는 문翰(文翰) 기구, 곧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사회적 역량이 미숙한 데서 초래된 결과였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합의와 관행을 쌓고 주체적 역량을 쌓아온 결과, 사림들이 정치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선조 연간 이후에는 ‘史禍’의 범주에 넣을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런 당대사 관리제도의 정착은 이후 실록을 개정할 경우에도 ‘朱墨史’의 모범에 따라 앞서 만들었던 실록을 없애지 않고 신·구본을 같이 보존하는 관행으로 이어졌다.

31) 『명종실록』 권7 3년 2월 신유조(14일). 이 사건 역시, 이궁익, 『국역연려실기술』(Ⅲ), 민족문화추진회, ‘을사사화’에 부록되어 있는 ‘무신년 안명세의 옥사’에 상세하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조선전기 기록관리 체계에 대하여, 크게 과거의 기억, 당대 기록의 작성, 기록을 통한 미래의 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세세한 서술보다는 당시 기록관리 체계의 구조를 조망하고, 그 체계의 산물인 실록의 성격에 대하여 기록학 개념을 통해 점검해보았다.

조선전기 과거의 정리는 무척 더디지만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에서 편찬된 기존 역사서의 연구와 간행을 병행하면서 진행되기는 했지만, 조선초기에는 국사와 동아시아사에 관한 정사와 통사가 편찬됨으로써 과거 경험의 활용이라는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다. 이는 정통성의 확보라는 정치사적 해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기록관리나 역사편찬 본연의 실용적인 목적이 우선되었음을 의미한다.

관료제의 발달은 조선 정부의 기록관리 체계를 더욱 촉진하였다. 직무의 연속성과 증거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제는 필연적으로 문서 생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중국 명(明)의 홍무예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곧 조선 나름의 행정문서 관리 방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조선의 당대 기록관리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일반 행정문서는 생애주기론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근대 기록관리와 큰 차이가 없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사초의 작성과 실록의 편찬이었다. 그래서 사초와 실록의 편찬을 기록학의 원본성과 신뢰성 개념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공적 권한을 가진 사관에 의해 생산되는 점에서 사초와 실록의 원본성은 물

론이고, 형식과 생산 절차를 고려해보았을 때 이들 기록의 신뢰성도 인정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만, 역사학의 사료비판에서 말하는 1차 사료/2차 사료라는 기준은 좀더 개념화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 기록학의 개념과 유용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사람들에게 과거의 기억과 당대의 기록은 곧 미래를 전망하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는 조선 건국 이래 향후 조선을 이끌어갈 정책과 이념을 창출하였으며, 당대 역사를 기록하던 사관제도는 문한(文翰) 기구, 곧 조선의 문치주의(文治主義)를 지탱하는 제도였다. 그 정착과정에서 나타났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상반된 역사해석조차 동시에 남기는 문화적 풍토, 즉 조선후기 수차례 실록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편찬된 실록을 함께 남기는 ‘朱墨史’로 상징되는 기록문화를 창출하였다. 변전하는 현실 정치세력의 이해조차 역사와 기록을 통하여 남기고, 뒷사람들에게 그 평가를 위임하였던 역사의식의 소산이었다.

[참고문헌]

- 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06(1989)
- Luciana Duranti,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The Concepts and Their Implication," *Archivaria*39(spring 1995)
- Luciana Duranti, *Diplomatics-New Uses for an Old Science*, The Scarecrow Press, Inc., 1998, p.36.
- 윤훈표, 「조선초기 공기록물(公記錄物) 관리제(管理制)의 개편」 『기록학연구』 2, 2000
- 오향녕, 「실록 : 등록의 위계」 『기록학연구』 3, 2001
- 오향녕, 『韓國史官制度成立史研究』 한국연구원, 2003
- 오향녕, 「實錄의 儀禮性에 대한 연구-慣例와 象徴性的 形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2003
- 오향녕, 「조선후기 국사체계(國史體系)의 변동에 관한 시론-실록(實錄)에서 일성록(日省錄)으로」 『역사와현실』 52, 2004
- 오향녕, 『여주 선조실록수정청의궤』 일지사, 2004
- 오향녕, 「조선후기 실록편찬의 성격」 『국사관논총』 105, 2004
- 오향녕, 「조선전기 史禍의 양상과 그 성격」 『한국사학보』 24, 2006
- 오향녕, 『朝鮮初期 性理學과 歷史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 오향녕, 『朝鮮初期 治平要覽의 編纂과 典據』 아세아문화사, 2007
- 강은경, 「고려시대 공문서의 전달체계와 지방 행정 운영」 『한국사연구』 122, 2003
- 박준호, 「『洪武禮制』와 朝鮮 初期 公文書 制度」 『고문서연구』 22, 2003

- 박준호, 「경국대전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고문서연구』
28, 2006
- 김현영, 「조선시대 지방 관아에서의 기록의 생산과 보존」
『고문서연구』 28, 2006
- 백선희,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기록학연구』 15,
2007

ABSTRACT

An Understanding of the Archival Management in Early Joseon Dynasty

Oh, Hang-Nyeong

In this article, I outlined the archival management system in Early Joseon Dynasty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t first, I explained the three aspects of the archival management; the memory of the past, the documentation of the contemporary, and the vision of the future through the documentation. Secondly, I tried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Veritable Record and its compilation by the concepts of archival science such as 'authenticity', 'reliability'.

In the memory of the past, the History of a Dynasty(Koryo-Sa) and the Comprehensive History of Eastern Kingdom were included. The arrangement of the past was accompanied with the systematic study of the domestic and foreign histories. At the beginning of the state building, there was many practical need to the experiences of government and social re-construction. It was also the process of the legitimacy establishment of the new dynasty. And the Bureaucrac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the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needed the continuity and evidence of business.

The dualistic structure of the records and archival management system was the most unique character of this age. The management of general administrative records was not different from the modern one. But the

historical drafts and the compilation of Veritable record were different. Here, I ha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rocedures by the concept authenticity, reliability, and custodianship. In doing so, I suggested the need of conceptualization of the historical terms such as 'the primary sources' and 'the secondary sources' in historical study. The archival concepts will be the most useful means to that issue.

Through the memory of the past and the documentation of the contemporary, they made visions of the future, new vision of the Literati Governance. In this tradition, in spite of the revision of the Veritable records by the new changed political party, both the original and the revised remained as the comparative evidence for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name of the Black-Red Revised History.

Key words: the Veritable Record, the History of a Dynasty, the Comprehensive History, Bureaucracy, Literati Governance, Authenticity, Reliability, the Black-Red Revised History